

일반공급(추첨제) 구비서류

■ 구비서류 [모집공고일 2026.05.22(금) 이후 발행분] ※ 인감증명서는 “본인 발급용”, 주민등록등·초본은 “전체포함”, 가족·혼인관계증명서 “상세” 제출 확인

구분	서류유형		구비서류	기준	주요확인사항
	필수	해당			
공통 서류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발급용 확인 (용도: 주택공급계약용)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가능
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(재외동포 : 국내거소사실신고증 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)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(본인 출생년도~모집공고일)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(또는 25년)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
대리인 추가서류		○	전세피해자 확인서류	본인 및 세대원	•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관련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
		○	위임장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 (청약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확인 및 대조 必)
		○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발급용 확인 (용도: 주택공급계약 위임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
주택 관련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			대리인	• 대리인 본인 확인
				해당자	•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(가옥대장등본 포함)
				해당자	•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
				해당자	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